

작성부서	경영지원본부 홍보부 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자	팀장 : 신광선 (☎ 02-3774-4081) 팀원 : 김율 (☎ 02-3774-4082)		
배포일	2016. 12. 30(금)	배포부서	홍보부 (☎ 02-3774-4082-5)

※ 이 자료는 1월 2일(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7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

□ 2017년 달라지는 증권시장 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 주요 내용 >

- ① (유/코/넥)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17.6월(예정))
- ② (코) 이익 미실현 기업도 일정요건 충족 시 상장 허용('17.1월)
- ③ (코)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확대('17.1월)
- ④ (유/코) 투자판단 중요정보 신속 제공 등 공시 적시성 강화('17.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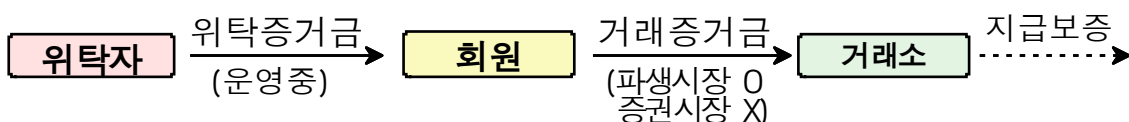
1.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도입 . 운영된 거래증거금제도가 증권시장에도 도입됨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 결제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17.6월(예정))

① (현황)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회원(증권회사 등)으로부터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증거금 제도는 파생상품시장에만 도입되어 있을 뿐, 증권시장에는 미도입

* (자본시장법 제396조) ②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참고 : 거래증거금 제도 >

◇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 및 해외 주요국(美·英·日·홍콩 등) 증시에서 도입·운영 중이나, 국내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은 미도입



② (개선)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15.6월) 등에 따라 시장위기상황 등이 거래소의 청산결제 위험으로 전이하지 않도록, 거래소의 결제이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 위험관리수단(거래증거금 등) 도입 필요

① (부과대상)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 및 상장증권상품(ETF,ETN,EL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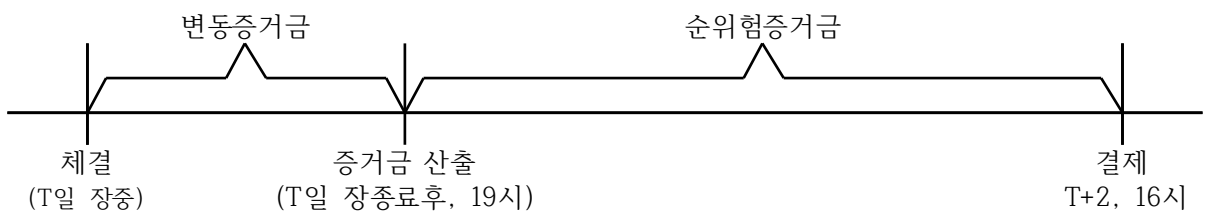
- 거래증거금 부과 기본목적은 결제완료시까지의 매매대상 자산 (증권 등)의 가격변동 위험을 커버하는 것이므로,
 -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하고 결제일이 매매 당일(T) 또는 익일(T+1)인 채권*은 추가 검토 후 도입 추진
 - * Repo 및 일반채권은 당일 16:30 결제, 국채는 익일 9시 결제

② (산출방법)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장종료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①과 변동증거금액^②을 산출하여 합산

- 각 그룹 내에서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중 위험이 높은 포지션^③을 대상으로 산출
- ①순위험증거금액 :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손실) 커버
- ②변동증거금액 : 현재 발생된 위험(손실) 커버
- ③시장급변(주가급락/급등)시 매수 혹은 매도거래 중 일방당사자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가능하므로 양 포지션 중 결제불이행 위험이 큰 금액에 증거금 적용

■ 거래증거금은 체결시점 부터 결제시점까지 증권 포지션 가치변동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 변동증거금은 체결시점 부터 증거금 산출시점(장종료 후 19시) 까지 손익을 반영한 정산금액이며, 순위험증거금은 증거금 산출시점 부터 결제시점(T+2일 16시)까지의 미래 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것임



③ (통지.납입시한) 거래소가 거래일 20:00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 하고 회원은 다음 거래일 15:00 이내에 납부

④ (예탁수단) 현금, 외화(주요 10개 통화) 및 대용증권(상장증권)

⑤ (예탁불이행시 처리)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

③ (효과) 거래증거금을 도입할 경우, 결제불이행 발생시 불이행 회원이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되므로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 강화

○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소 등의 청산결제 위험관리 관련 국제기구들의 점검 평가에 있어서도 국제기준 준수* 가능

* IMF는 우리나라 거래소의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권고한 바 있음('13.7월)

2.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공모가×발행주식총수)와 영업기반(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17.1월)

① (현황)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은 과거 재무실적(이익)을 중시하여 적자기업들의 상장문호는 제한적*

* 이익을 실현한 기업이 i) 이익규모(ROE, 당기순익), ii) 외형기반(매출/시총), iii) 성장성(매출/증가율)을 갖춘 경우 상장이 가능

② (개선)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양화

① 현행 외형기반(매출/시총) 요건을 확대, 적자라도 매출이 성장하는 적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② 성장성 있는 기업의 진입요건도 확대하여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개선,

※ 단, 상장주선인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주선인이 일반 청약자에 대해 공모가 90%보장 등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여 [세부내용은 금투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 예정]

③ (효과)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상장요건 중 이익규모등 요건 개선 전후 비교 >

구분	현행	개선후
대상	현재 이익을 실현한 기업	적자기업까지 상장문호 확대
이익 규모 등 요건	(1) 일정규모 이익실현기업 ○ 계속사업이익 有 & ROE 10% 또는 당기순익 20억	(1) 일정규모 이익실현기업(현행 동일) ○ 계속사업이익 有 & ROE 10% 또는 당기순익 20억
	(2) 수익기반이 있는 이익실현기업 ○ 계속사업이익 有 & 매출 100억/시총 300억	(2) 매출성장 적자기업까지 확대 ○ 계속사업이익 有 & 매출 100억/ 시총 300억 ○ <u>시총 500억&직전 매출액 30억& 직전2년평균매출증가율20%(신설)</u>
	(3) 성장성 있는 이익실현기업 ○ 계속사업이익 有 & 매출 50억/매출증가율 20%	(3)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까지 확대 ○ 계속사업이익 有 & 매출 50억/ 매출증가율 20% ○ <u>시총 500억 & 공모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신설)</u>

3.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확대)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보다 원활해집니다. ('17.1월)

① (현황) 창의.혁신적 사업(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新성장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상장을 통한 공모자금 조달 등 적시 자금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로는 한계* 존재

* 바이오기업 편중, 전문평가기관 중심 제도

② (개선) 현행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확대 개편

①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 신설

-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 심사 청구 허용**
- 단, 상장주선인의 “추천” 여부가 상장의 핵심요소인 만큼 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장치*** 도입

* 상장 후 6개월간 상장주선인이 일반 청약자에 대해 공모가 90%보장 등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여, 상장주선인 추천 보고서(성장성보고서) 작성 등 [세부내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반영]

② **현행 기술성장기업 평가모델의 다변화**

- 기술력 평가가 어려운 업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성 항목을 **사업성 항목*** 등으로 대체한 새로운 평가모델을 추가

* 경영자역량, 사업운용능력, 시장환경 등

③ (효과)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촉진하고, 상장주선인의 기업발굴 기능을 강화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현행	개선안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과 성장성 평가결과 A등급 이상 중소기업	i) 상장주선인(증권회사)가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하는 중소기업(추천상장특례) ii) 전문평가기관이 기술성과 성장성 또는 사업성 평가 결과 A등급이상 중소기업(평가모델 다변화)

4. (공시 적시성 강화)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도입 및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하는 등 공시의 적시성이 강화됩니다. ('17.1월)

① (현황) 업종 및 상장법인의 특성에 따라 기술계약 등 공시*가 주가 및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자율공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유가) /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코스닥)

** 호재성 공시사항 및 의무공시대상에 비해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항 중 공시여부에 대해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05.12월 도입)

- 아울러 既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공시(정정공시)의 경우 공시시한이 원 공시의 공시시한을 준용

① 원공시가 수시공시 중 **당일공시** 사항 : 변동사실도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시

② 원공시가 수시공시 중 **익일공시** 사항 : 변동사실도 사유발생 **익일까지** 공시

③ 원공시가 자율공시사항 : **공시시한이 익일까지**이므로 변동사실도 사유발생 **익일까지** 공시

② (개선) 기술계약 등 공시를 의무공시로 편입하고 정정공시 시한도 당일로 단축

- ① 기술계약 등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포괄주의 의무공시사항으로 이관

- (포괄주의 의무공시사항) 거래소 의무공시사항은 열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누락이 발생하여
 - 열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재무·경영활동 등을 “포괄의무 공시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하였으나(‘16.5.1), 자율공시사항은 포괄의무 공시사항에서 배제
 - ➔ 따라서 기술계약 등 공시를 자율공시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사항 발생시 기업이 포괄의무 공시사항으로 공시하도록 유도

②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발생일 당일로 단축

- 정정공시 공시시한 적용에 있어 원공시의 공시시한과 반드시 연동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투자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단축될 필요성이 큰 만큼,
 - ➔ 정정공시시한을 원 공시시한과 무관하게 정정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

③ (효과)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가 보다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기업공시정보를 투자자에게 보다 적시(timeliness)에 제공 가능